

생산등록번호	교무처-1346
등록일	2023. 4. 11.
결재일	2023. 4. 1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교무학사팀장	교무처장	총장
			2023. 4. 11.
임명옥	안병섭	박태종	조현명
협조자			

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지침



경상남도립남해대학
(교 무 처)

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지침

재직자 및 유턴입학자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학습경험 및 산업체 직무경험 등의 선행학습경험을 학점인정하여 학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기준 및 절차를 지정

1 | 관련

○ 관련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(학점의 인정 등)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학점인정)
- 「경남도립남해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규정」 제3조1항제1호
- 「경남도립남해대학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규정」
-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가이드(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 제2018-11호)

○ 추진목적

- 고졸취업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성인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활성화
- 직업경험, 정규·비정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여 조기에 학위취득을 가능케 함

2 | 제도 개요

○ 선행학습경험 : 산업체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

○ (인정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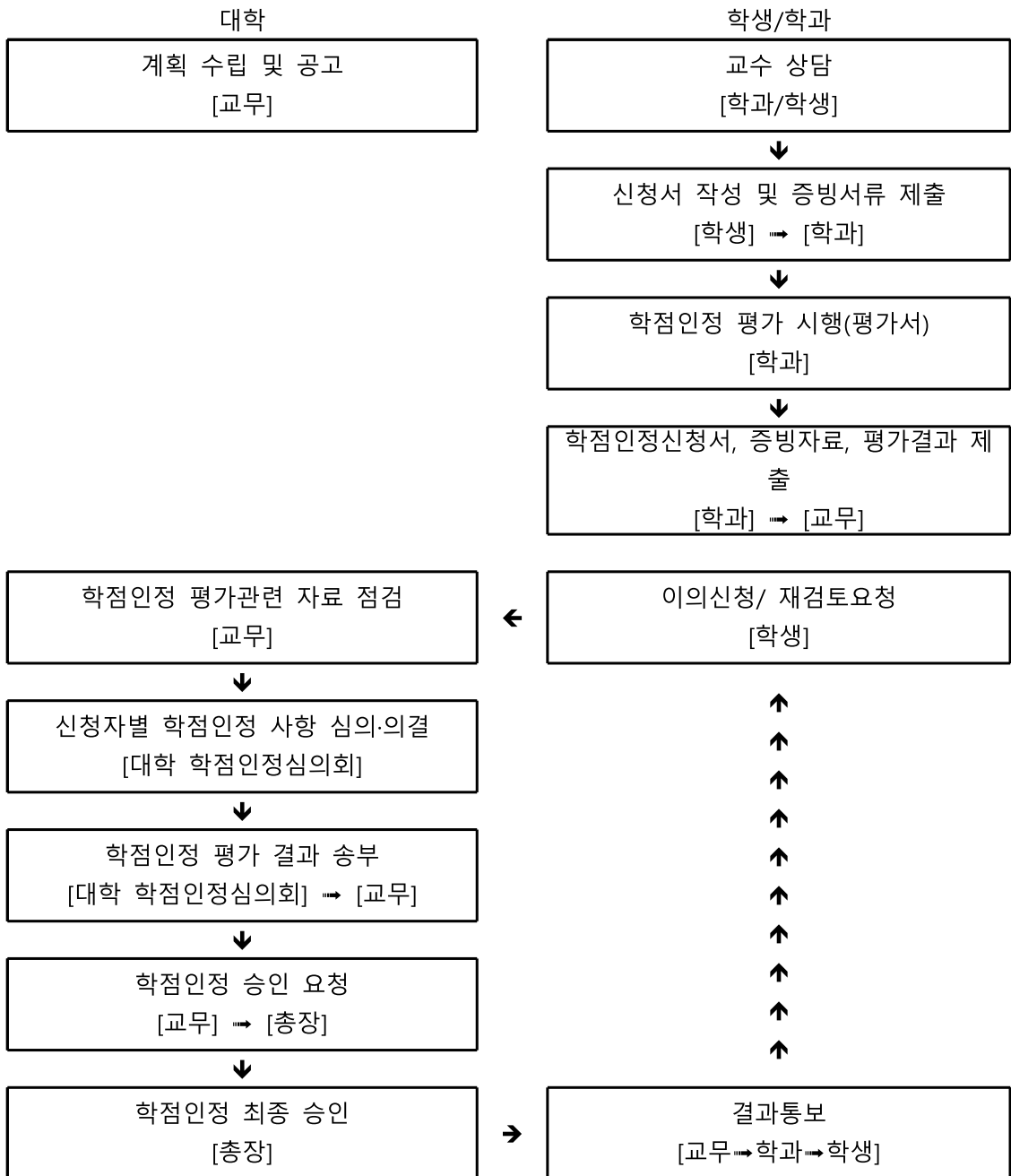
- 타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
- 평생교육시설 취득학점(평생교육법 관련)
- 고교이수교과(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)
- 군복무 중인 휴학자가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(병역법 제73조 관련)
- 국내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 근무한 경력자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취득(국가기술·국가공인) 또는 시험 합격자

○ 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)

- 학점인정 대상 총 인정 범위 : 졸업학점의 4분의 3이내
- 공동교육과정 운영 제외 기타 :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
- 병역법에 따른 학점인정 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 이내
- 국내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: 졸업학점의 4분의 1이내

3 | 학습경험 인정 절차와 조직 운영

○ (학점인정 절차)



○ (운영조직 및 역할)



○ (위원회 구성)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(학과),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

4 | 학습경험 인정 평가요소

○ 학점인정 평가 고려사항

- (타당성) 신청자의 학습경험이 해당 교과목의 내용과 성취수준에 부합여부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 관련

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.

※ 해당 교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과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

- (신뢰성) 평가 대상이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정도의 객관적 평가 기준

- (다양성)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평가대상으로 인정

- (공정성)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사전안내 및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

- (개별성)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신청, 재심사 요구할 권리

- (진실성) 신청자 본인의 학습경험인지, 제출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면담, 구두시험,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확인

- (적법성) 평가인정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
- (적합성) 선행학습경험이 현재 통용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력과 부합하는지 확인(최근의 기술변화를 포괄하지 못한 너무 오래된 기술자격은 추가적인 확인과정이 필요)
- (포괄성) 학점인정에 대한 내용과 범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학점인정 방법이 개인의 성취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
- (투명성) 신청자가 학점인정 척도나 기준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절차, 과정, 결과를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함

5 | 사전 준비 사항

- (학과) 전공 교육과정 매학기 개설과목 중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지정
- (학과) 교과목별 평가기준 및 인정증빙서류 설정
 - 증명서, 이수증, 직무기술서 등
 - 평가요소 : 해당교과와 내용일치성, 내용숙달도, 재현가능성, 경험빈도, 검증가능성
- (학과) 과목별 학습경험인정 신청서 작성(교과목 특성을 고려)
- (교무) 입시안내 또는 재학생 대학생활 안내 등 제도 홍보

6 | 행정사항

- 매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사전조사(교무처)
 - 학과내 의견수렴하여 인정교과 및 인정증빙 확인(학과)
- 총괄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(교무처)
- 신입생 및 재학생 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(학과, 교무처)

붙임 별지서식 제1~4호 각 1부. 끝.

[별지 2호] 직무경험 직무기술서

선행학습경험(직무경험) 학점인정 직무기술서				
학과명				
성 명		학 년		
학 번		연락처		
신청교과목	과 목 명		학점	
	과목코드		시	이론
	이수구분		수	실습
경력기관 (산업체 등)	기관명		직 책	
	직무기간(년월)	. . . ~ . . .		
	주 소			
	확인자 (기관담당자)		연락처	
직무경험 기술	※ 기술하고자 하는 직무와 본 교과목과의 연관성, 직무경험시기 및 빈도, 직무숙달정도, 직무수행시 고려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	첨부서류	1. 경력증명서(학생) 2. 교과목 강의계획서(교수)		

선행학습경험(교육경험) 학점인정 직무기술서				
학과명				
성 명		학 년		
학 번		연락처		
신청교과목	과 목 명		학 점	
	과목코드		시	이론
	이수구분		수	실습
교육운영 기관정보	기관명		직 책	
	교육기간(년월)	. . . ~ . . .		
	주 소			
	연락처			
교육경험 직무관련 기술	※ 기술하고자 하는 교육경험과 본 교과목과의 연관성, 교육이수시기, 직무수행시 고려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	첨부서류	1. 성적증명서,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(학생) 2. 교과목 강의계획서(교수)		

□ 학점인정 평가요소별 평가기준

평가요소	평가기준		비고
내용일치성	상	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, 이를 인정할 수 있음	경험의 내용 관련성 각 교과목 주차별 강의계획
	중	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,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	
	하	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	
내용숙달도	상	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(배경)를 정리할 수 있음	수행에 필요한 고려 사항 인식정도
	중	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	
	하	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	
재현가능성	상	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	산출 현실성 산출 정확성
	중	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(안내서, 인적자원)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	
	하	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. 안내서 또는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	
경험빈도	상	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-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	과거 경험 빈도
	중	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-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~4회 실시	
	하	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	
검증가능성	상	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받음	자격증, 수상경력,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 제시 가능
	중	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	
	하	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	

□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기준

평가결과	기 준
상	· 3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'상' 등급인 경우 - 단, 내용일치성, 내용숙달도, 재현가능성 중 두 평가요소는 반드시 '상' 등급 이어야 함
중	· 4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'중' 등급 이상인 경우 - 단, 내용일치성, 내용숙달도, 재현가능성은 반드시 '중' 등급 이상
하	· '하' 등급 평가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- 단, 내용일치성, 내용숙달도, 재현가능성 중 두 평가요소가 '하'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'하' 등급 처리